



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07.11.14
개정일	2021. 4.15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학사학위지원센터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입학전형계획(설치학과 및 모집인원)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
 3.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 4. 전공심화과정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 5.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 6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 5. 1)
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(개정 2009. 2.13, 2020. 3. 1, 2021. 4.15)
 ③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09. 2.13)
- 제 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5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제 6조 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제 7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 8조 (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)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및 졸업, 교육과정 운영, 자체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0. 3. 1)
 ②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의 학과장으로 하고,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20. 3. 1)
 ③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20. 3. 1)

[제목개정 2020. 3. 1]

제 9조 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